

서대문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**민원 제목** : 청소행정과의 반복 민원 기피 및 무단투기 방치에 대한 고충 민원

□ **신청 원인**

○ △△길 일대의 지속적인 담배꽂초 무단투기로 인한 고충민원

□ **피신청인 등의 주장**

- 특정 업소 앞을 중심으로 다량의 담배꽂초 무단투기 발생
- 이에 대한, 담당부서의 단속 부재 및 형식적 계도
- 과태료 부과 여부 및 현장단속 출장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형식적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

□ **사실관계**

- 2025. 7. 18. 현장확인 조사
 - 현장방문 대상지는 상가 지역으로, 특히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식당, 주점 등이 밀집된 지역임.
 - 현장방문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여서 그런지 통행량도 적고 해당 골목길이 깨끗하게 청소 및 관리되어 있었으며, 무단투기 방지용 빗물받이도 설치되어 있는 등 서대문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□ **관계법령 등**

○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」

제5조(서대문구의 책무)

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

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서대문구민의 책무)

- ① 서대문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결명령 이행제도)

-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,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9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

-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
- ②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□ 판단 및 결론 (의견표명)

-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서대문구에서는 단속부재 및 형식적 계도가 아닌 담배꽂초 등 무단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임을 다시 한번 회신처리토록 하고, 이후에도 추가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.